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1997. 3. 12.
행정재무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7년 2월 18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1997년 2월 20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('97.3.12) 상정 의결

2. 提 案 說 明 的 要 旨 (제안설명자 : 기획실장 윤정중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시행(1996.12.6)으로 기구가 신설 및 개편되어 동 조례에서 정한 기구(직제)의 분장사무와 직위의 명칭에 맞도록 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위원에 기획실장을 추가하여 구성함(안 제3조제3항)
- 간사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변경(안 제6조제1항)

3. 專 門 委 員 的 檢 討 報 告 要 旨 (전문위원 : 허 영 훈)

동조례는 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기획실장을 추가하여 구성하고 간사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직위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'96.12.6.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구청의 기구가 신설 및 개편됨에 따라 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審 査 結 果 : 원 안 의 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
번호

112

제출년월일 : 1997. 2. 18.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시행(1996. 12. 6)으로 기구가 신설 및 개편되어 등 조례에서 정한 기구(직제)의 분장사무와 직위의 명칭에 맞도록 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위원에 기획실장을 추가하여 구성함(안, 제3조 제3항)
- 간사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변경(안, 제6조 제1항)

3. 개정근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'96. 12. 6. 조례 제349호)

4. 참고사항

- 합의 사항 : 없음
- 예산 조치 : 필요없음
- 개정조례(안) : 별첨

첨부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. 끝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은 기획실장, 총무국장, 재무국장, 시민생활국장, 도시정비국장, 건설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위원은 재정관련 전문가(2 ~ 3인), 구의원(4 ~ 5인)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제6조제1항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 (안)
제1조 (목적) (생략)	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	제2조 (기능) (생략)	제2조(기능) (현행과 같음)
제3조 (구성) ① ~ ② (생략) ③ 위원은 <u>총무국장, 재무국장, 시민생활국장, 도시정비국장, 건설국장을</u>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<u>재정관련 전문가(2 ~ 4인),</u> 구의원 (4 ~ 5인)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	제3조(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위원은 <u>기획실장, 총무국장, 재무국장, 시민 생활국장, 도시정비국장, 건설국장을</u> 당연직 위 원으로 하고, 위촉직위원은 <u>재정관련 전문가(2 ~ 3인),</u> 구의원(4 ~ 5인)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는 자가 된다.	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	제4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) (생략)	제4조 (현행과 같음)
제5조(회의) (생략)	제5조 (현행과 같음)	제6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<u>기획예산과장이</u> 된 다.	제6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 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<u>기획예산담당관이</u> 된다.
제7조 ~ 제12조 (생략)	제7조 ~ 제12조 (현행과 같음)		